

# 日本 電氣用品 取締法에

## 依한 登錄節次 解説

### 1. 日本電氣用品取締法の 概要

#### 가. 日本電氣用品取締法の 制度

日本電氣用品取締法은 電氣用品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으로써 粗惡한 電氣用品에 의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電氣用品의 범위, 甲種 電氣用品 및 乙種 電氣用品의 定하는 외에 甲種 電氣用品 製造事業者의 등록 및 형식인가(형식승인), 乙種 電氣用品 제조 및 수입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 판매 및 사용의 제한, 指定試驗機關에 관한 사항, 電氣用品의 제조 및 수입사업자 등에 의한 보고의 징수, 工場檢査, 電氣用品의 제출, 개선 명령, 수수료 등에 대하여 定하고 있다.

#### 나. 電氣用品의 범위

法の 規制대상으로 된 電氣用品은, 同法 第2条에 「일반용 電氣工作物(電氣事業法 第66条第1項에 규정된 일반용 電氣工作物을 말함)의 부분이고 또한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材料로서 政令으로 定한 것」 및 「携帶發電機로서 政令으로 定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電氣用品은 甲種 電氣用品과 乙種 電氣用品으로 분류하고 規制내용을 2단계로 하고 있다.

그 분류의 정의는 「甲種 電氣用品이란 구조 또는 사용방법, 기타 사용상황으로 볼 때 특히 위해 또는 장애의 발생이 될 우려가 많은 電氣用品으로서 政令으로 定한 것을 말하며, 乙種

電氣用品은 甲種 電氣用品 이외의 電氣用品을 말함」으로 되어 있다. 그 세부품명은 第1表(354品目) 및 第2表(143品目)와 같다. (表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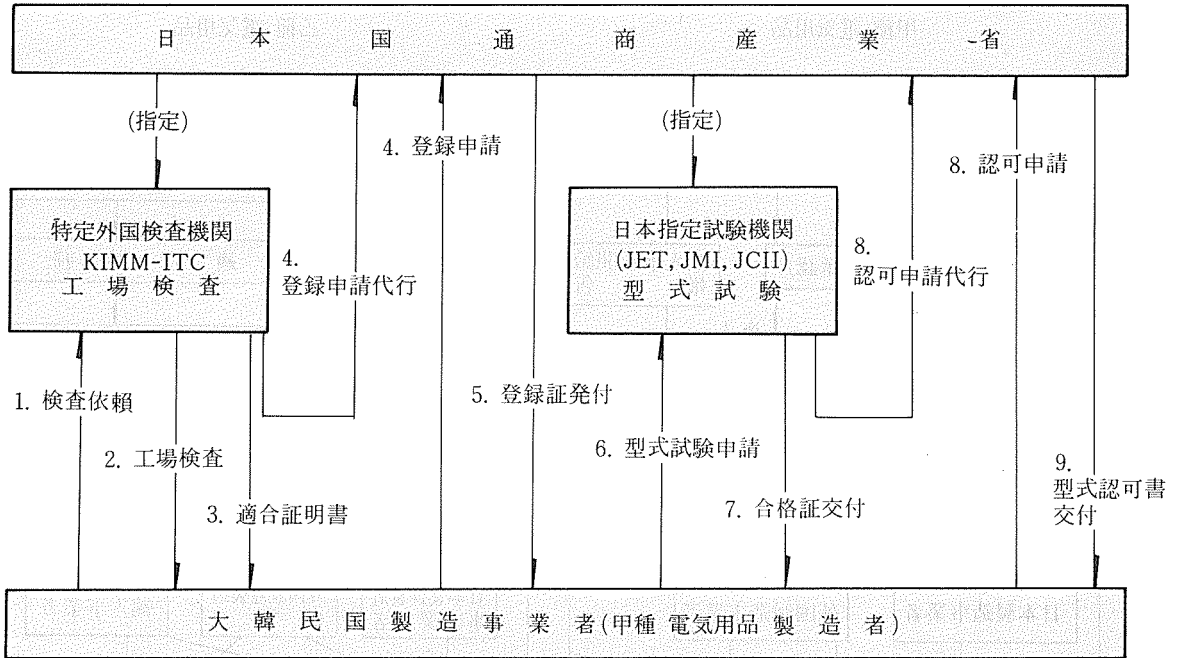
#### 다. 日本電氣用品取締法の 改正 要旨

諸外國의 요청, GATT協定上의 요청에 따라 國際貿易摩擦의 해소를 위한 日本市場 개방의 일환으로 同法의 일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外國製造事業者에 대한 등록, 형식승인의 직접 신청을 認定(法改正 1983年 8月 시행)
- 2) 동일 제품에 대해서, 輸入事業者間의 認定型式認可를 認定(法改正 1983年 施行)
- 3) 外國製造事業者의 登録時에 工場檢査를 特定外國檢査 機關이 代行 가능(1984年 5月 정비)
- 4) 型式承認試驗 등에 대해서 外國試驗機關의 試驗成績書를 認定
  - ① 契約方式(1982年 12月 정비)
  - ② IECEE - CB制度(1984年 4月 가입)
  - ③ 通商産業省 大臣에 의한 指定方式(1986年 3月 정비)
- 5) 技術基準에 IEC規格의 채택(1986年 11月 이후 현재 56規格)

라. 日本電氣用品取締法の 規制에 대한 체계도

電氣用品取締法の 規制에 대한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日本 電気用品取締法の 規制에 대한 체계도

마. 甲種 電気用品에 대한 日本의 輸入規制 내용

(1) ㉞의 표시가 없는 것을 수출할 경우 日本의 輸入事業者가 ㉞의 표시가 없는 甲種 電気用品을 수입 판매코자 할 때에는 다음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가) 型式認可

日本의 輸入事業者는 수입 판매코자 하는 甲種 電気用品(輸入事業者가 수입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형식구분에 따라서 製造事業者別로 通商産業 大臣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輸入事業者가 이미 동일 형식구분 및 동일 제조사업자에 대해서 型式認可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確認을 받아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技術基準의 적합 의무

輸入事業者가 型式認可를 받은 甲種 電気用品을 수입 판매할 경우, 그 電気用品은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의무에 위반될 때에는 개선 명령이나 업무

정지 명령이 적용되고 다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型式認可를 취소하고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 表示의 義務

型式認可를 받은 輸入事業者는 그 認可에 따른 형식의 甲種 電気用品에 소정의 표시를 붙여야 한다.

표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電気用品別로 法으로 정해져 있다.(施行規則 第24条 別表第7)

(2) ㉞의 표시가 부착된 것을 수출할 경우

日本의 輸入事業者가 ㉞의 표시가 붙은 甲種 電気用品을 수입 판매코자 할 때에는 다음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 事業開始報告

外国登録製造事業者가 다음(3)의 수속에 따라 承認을 받은 型式의 甲種 電気用品에 소정의 표시가 붙은 것을 수입할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만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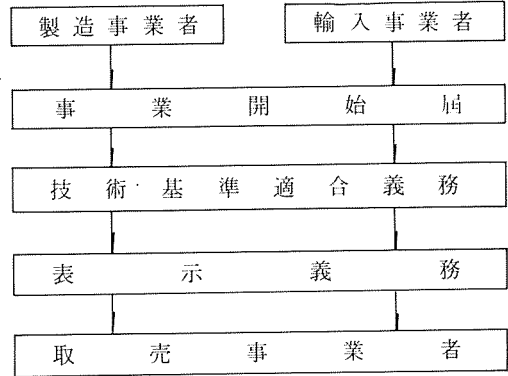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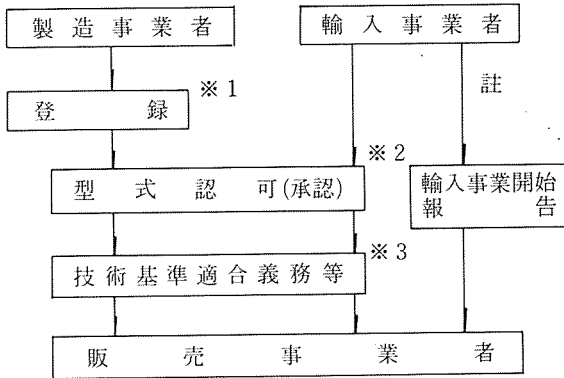
다만, 輸入事業者는 그 표시가 정당히 부착된 것인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外国製造事業者에 대한 규제

(가) 製造事業者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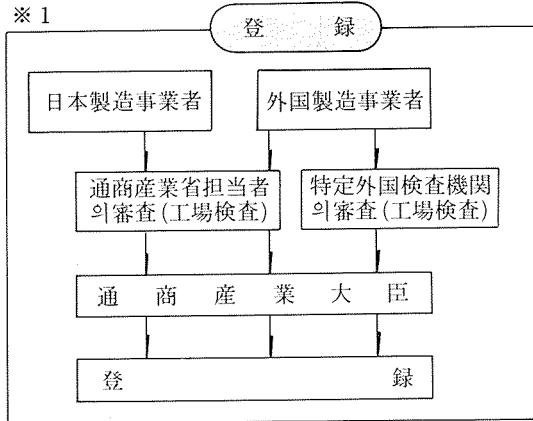
甲種 電気用品

乙種 電気用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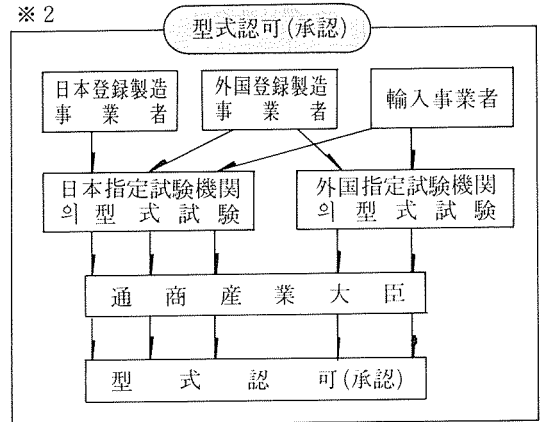


註：外国製造事業者が型式承認を 받고 所要의 表示를 한 것을 輸入하는 者は 報告만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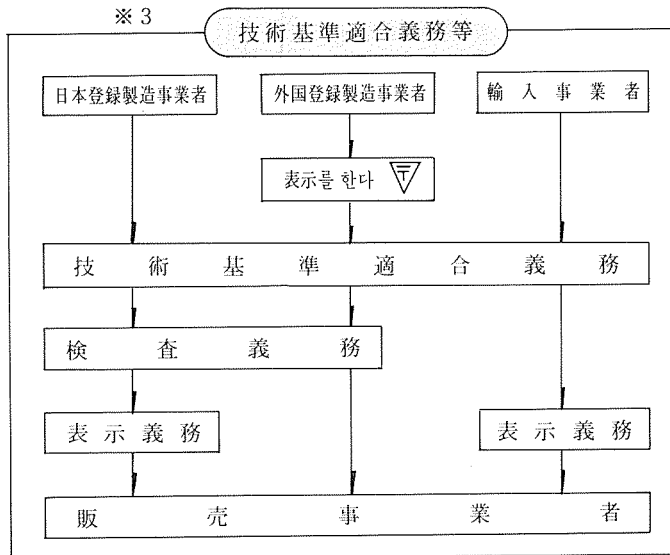
※1



※2



※3



電気用品取締法の 体系図

日本에 輸出하고자 하는 甲種 電氣用品의 제조사업을 할 때에는 제조하고자 하는 電氣用品에 속하는 사업구분(施行規則 別表 第1) 別로 通商産業 大臣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준은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특정 제조설비와 특정 검사설비가 省令으로 定한 기술기준(施行規則 第6条 및 第7条)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通商産業 大臣의 지정을 받은 特定 外国 檢査機關(韓國機械研究所 附設 企業技術支援센터)의 적합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에 通商産業省의 담당관이 行하는 현지공장 심사는 생략된다.

#### (나) 型式承認

등록을 받은 製造事業者가 日本에 輸出하고자 하는 甲種 電氣用品에 대해서는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형식구분(施行規則 第14条 別표 第4)에 따라서 通商産業 大臣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시의 요건은 시험용의 電氣用品이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法에 따라 지정받은 (財) 日本電氣用品試驗所, (財) 機械電子檢査檢定協會, (財) 日本写真機光學機器檢査協會에서 한다. 承認有效期間은 電氣用品의 종류에 따라 3年, 5年, 7年으로 定하고 있다.(施行令 第1条 別表 第1) 또한 형식구분을 벗어나지 않고 仕様을 변경한 製品을 제조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도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製品을 제조하여야 한다.

#### (다) 技術基準의 適合義務

登録製造事業者가 型式承認을 받은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할 때에는 그 電氣用品이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의무에 위반될 때에는 特定製造設備, 特定檢査設備, 檢査方法 등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적용하거나 1年 이내의 기한으로 제조, 판매사무의 정지명령이 적용되기도 하고, 다시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면 型式承認이 취소되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한편 벌칙이 적용된다.

#### (라) 檢査의 義務

登録製造事業者는 제조하는 甲種 電氣用品에 대해서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마) 表示의 義務

型式承認을 받은 登録製造事業者는 승인된 甲種 電氣用品에 ㉞ 마크 및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의 내용은 電氣用品別로 定해져 있다.(施行規則 第24条 別表 第7) 만일 이 표시가 없으면 日本輸入事業者가 형식인가를 받아야 한다.

#### 바. 乙種 電氣用品에 대한 日本의 輸入規制 내용

日本에 輸出하고자 하는 乙種 電氣用品에 대해서는 日本輸入事業者를 경유하여야만 한다.

#### (1) 乙種 電氣用品 輸入事業者에 대한 규제 내용

##### (가) 事業開始의 신고(届出)

乙種 電氣用品의 輸入事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通商産業 大臣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届出)하여야 한다.

가. 성명, 명칭 및 주소, 주인인 경우는 대표자명

나. 該当 乙種 電氣用品의 종류 및 구조

다. 該当 乙種 電氣用品 製造事業者의 성명, 명칭 및 주소

##### (나) 技術基準의 적합의무

輸入事業者가 乙種 電氣用品을 수입 판매할 때에는 그 電氣用品이 通商産業省令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義務에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業務停止命令이 적용되거나 벌칙이 적용된다.

##### (다) 表示의 義務

輸入事業者는 수입 판매하는 乙種 電氣用品에 ㉞ 마크 및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表示內容은 電氣用品別로 定해져 있다.

##### 사. 販賣事業에 대한 규제

電氣用品 販賣事業者는 所定の 표시(㉞ 마크 또는 ㉞ 마크, 기타 表示事項)가 없으면 電氣用品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가 없다.

## 2. 外国製造事業者의 登録

### 가. 外国製造事業者의 등록 절차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하고자 하는 者는 電氣用品取縮法 第17条 2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登録制度는 製造事業者가 앞으로 안전한 電氣用品을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신청에는 소정의 製造設備와 檢査設備를 保有하고 있는가와 제조과정에서 어떠한 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신청절차는 신청서류를 日本通商産業省에 직접 제출하여 通商産業省의 담당관이 현지공장 심사를 하는 (그림-1)의 경우와 通商産業 大臣의 지정을 받은 特定 外国檢査機關(韓機械 研究所 附設 企業技術支援센터)의 현지공장 審査를 받고 特定 外国檢査機關이 발행한 적합증명서를 첨부하여 通商産業省에 제출하는 (그림-2)의 경우 등의 두 방법이 있다.

#### (1) 事業区分마다 등록

法 第17条의 2에는「製造事業区分에 따라 등록을 받아야 한다」라고 定해져 있다. 이 사업구 분이란 電氣用品取縮法 施行規則 別表 第1에 기재된 20区分(第3表 참조)으로 비교적 유사한 전기용품으로서 공통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를 필요로 하는 電氣用品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이 事業区分別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電氣스토프를 제조하기 위해서 「電 熱器具製造事業」의 事業区分으로 등록을 받은

製造事業者가 추가로 電氣다리미를 제조할 때에는 다시 등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 製造事業 者가 電氣세탁기를 제조할 때에는 다른 事業 区分인 「交流電動機 등 應用機器類 製造事業」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 (2) 登録申請書を 提出하는 곳

申請書는 「日本 通商産業省 資源에너지庁 公益事業部 技術課 電氣用品室」에 제출한다.

다시 말하면 신청서에 特定 外国檢査機關의 적합증명서를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가) 適合證明書を 첨부하지 않을 경우

1) 登録申請書を 技術課 電氣用品室에 제출한다.

2) 通産省 직원에 의한 공장심사 실시일의 약 1주일전에 등록수수료(1事業 区分당 47,000円+通産省 직원 1人分の 출장비)를 수입인지로 電氣用品室에 지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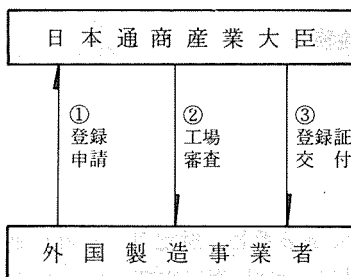
#### (나) 適合證明書を 첨부하는 경우

1) 特定 外国檢査機關에 工場檢査를 의뢰 하여 製造設備 및 檢査設備가 通商産業 省승으로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다는 適合證明書を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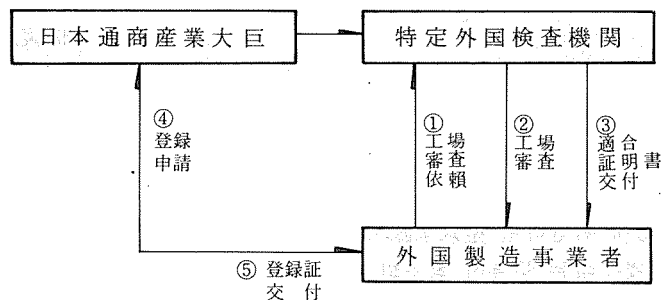
2) 上記 適合證明書を 첨부한 登録申請書 類를 技術課 電氣用品室에 제출한다. 이 때 登録手数料(1事業区分마다 9,600円)를 수입인지로 電氣用品室에 지불하여야 한다.

#### (3) 登録申請에 必要한 書類

(가) 外国製造事業者 登録申請書(施行規則 第3 条 様式第1)



(그림 1)



(그림 2)

- 1) 事業区分
  - 2) 製造工場의 명칭 및 소재지
  - 3) 特定製造設備의 명칭, 성능 및 數
  - 4) 特定檢査設備의 명칭, 성능 및 數
- (나) 서약서
- (다) 위임장
- (라) 첨부서류
- 1) 電氣用品名
  - 2) 定 格
  - 3) 製造方法의 概要
    - 가) 製造工程 나) 製造工程의 보충 설명
  - 4) 檢査方法의 概要
    - 가) 受入檢査 나) 中間檢査
    - 다) 完成品檢査
    - 라) 他人에게 위탁하는 檢査
  - 5) 材料, 部品の 구입계획
  - 6) 下請加工 外注計劃
  - 7) 工場 또는 事業場의 부근 略圖
  - 8) 製造코자 하는 甲種 電氣用品의 写真·構造圖
  - 9) 日本 国内의 連絡處 住所, 姓名, 電話 番号
- 나. 登録申請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요령
- (1) 登録申請書의 작성방법
  - (가) 用紙의 크기는 JIS規格 B5로 할 것
  - (나) 수입인지는 消印하지 말 것
  - (다) 日本語로 기재할 것
  - (라) 주소, 성명은 日本語와 原語를 併記할 것
  - (마) 연락난에는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할 것.
- 이것은 서류의 미비점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연락하기 위한 것이다.
- (바) 第3項, 第4項의 特定製造設備과 特定檢査設備은 별지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사) 신청서는 3通을 작성한다.
- 1) 通商産業省의 제출용..... 1通
  - 2) 特定 外国檢査機關의 제출용..... 1通
  - 3) 신청자의 보관용..... 1通
- (2) 事業区分 ○○製造事業
- ※ 事業区分 一覽 參考

事業区分 一覽

事 業 区 分	
1	(1) 고무系 絶緣電線類 製造事業 (2) 合成樹脂系 絶緣電線類 製造事業
2	(1) 金屬製 電線管類 製造事業 (2) 金屬製 可撓電線管 製造事業 (3) 金屬製 電線管類 附屬品 製造事業 (4) 合成樹脂製 電線管類 製造事業 (5) 合成樹脂製 電線管類 附屬品 製造事業
3	(1) 系 퓨즈類 製造事業 (2) 包裝 퓨즈類 製造事業 (3) 溫度 퓨즈 製造事業
4	配線器具 製造事業
5	電流制限器 製造事業
6	小形 单相 變圧器類 製造事業
7	各形 3相 誘導動機 製造事業
8	電熱器具 製造事業
9	(1) 交流電動機 等 応用機器類 製造事業 (2) 裝飾用 電燈器具 製造事業 (3) 光源応用 機械器具 製造事業 (4) 電子応用 機械器具 製造事業 (5) 携帶發電機械 製造事業

다. 製造開始後의 諸注意

(1) 甲種 및 乙種 製造事業者, 輸入事業者는 製品이 항상 技術基準에 적합한가에 주의하여야 한다.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당국의 공장검사가 있어도 제시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30일 이내에 變更届를 제출할 것.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製造事業者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될 경우

(나) 甲種 電氣用品을 제조하는 工場 또는 事業場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3) 日本電氣用品取締法 및 關係法令集을 비치同法令集을 비치하고 이것을 참조하면 편리하고, 技術基準 적용에 대한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4) 登録證, 申請書 등의 보존

登録申請書의 写本, 登録證, 型式承認 등은

用品名마다 정리하여 잘 보존하여야 한다.

다. 外国登録製造事業者의 변경 신고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에 登録事項, 特定製造設備 및 特定検査設備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法 10條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変更届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通商産業省 資源에너지庁에 제출하여  
 訂正을 받아야 한다.

電氣用品 關係管庁 및 試驗検査機關 소재지

官庁・試驗検査機關名	電 話	所 在 地	電話番号
通商産業省資源에너지庁 公益事業部技術課電氣用品室	03(503)7079	日本東京都千代区が쓰미가関 1-3-1	100
韓國機械研究所 附設企業技術支援센터 電氣試驗研究部	02(863)0611 (구내 675)	서울特別市九老区九老洞 222-13	152
(財)日本電氣用品試驗所	03(466)5121	日本東京都渋谷区代木 5-14-12	151
(財)機械電子検査検定協會関東事無所	03(416)0111	日本東京都世田谷区砧 1-21-25	157
(財)日本写真機光学機器検査協會	03(263)7111	日本東京都千代田区一審町 25	102

**P. 75에서 계속**

- 건은 만족한가?
- 7) 성형품이나 런너의 취출시간을 줄일 수 없는가?  
(자동낙하 방식이나 완전 자동운전엔 불가능한가?)
  - 8) 성형 불량에 대한 현상 파악은 실시되고, 총별 및 그 대책이 수립되어 실시되는가?
  - 9) 노즐 터치부로부터 수지가 새는 것은 없는가?  
(기타 기계의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없는가?)
  - 10) 종업원 전체가 원가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가?
- 다. 일반 관리사항
- 1) 원재료의 입고 및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 2) 사용하다 남은 재료는 재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구분되어 보관하고 있는가?

- 3) 검사방식 및 한도 건본은 납품처와 합의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불합격된 Lot의 처리는 명확한가?)
- 4) 냉각수 순환방식은 적정하고 냉각시간을 줄이기 위한 부대설비 및 노력을 하고 있는가?
- 5) 금형설치 시간의 단축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가?
- 6) 기계 고장시간의 단축을 위해 고장발생부품의 유보품을 갖고 있는가?
- 7) 수지교체 및 색상 교환시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8)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은 실시되고 있는가?
- 9) 생산부 자재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10) 불량률, 가동률, 효율 등이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목표가 있는가?